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오케이캐피탈㈜

2. 조치일 : 2026. 1. 20.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5건, 개선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취급 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오케이캐피탈㈜(이하 '회사')은 2020.6월 이후 검사착수일(2025.5.26.) 현재까지 선순위·중순위·후순위 등 채권 상환 순위에 따라 리스크 수준이 다른 PF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대주단 총 대출금 중 회사의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 및 금액 한도, 선순위·중순위·후순위 등 채권 상환 순위별 대주단 참여 비중 한도 등 PF대출 상환 순위에 따른 취급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실 발생 시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중순위 또는 후순위 PF대출에 편중하여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리스크 증가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PF대출이 중순위 또는 후순위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리스크 허용한도를 차등 부여하여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PF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PF대출 취급 관련 성과보수 지급체계 강화

회사는 IB사업부 전문계약직 임직원에게 부동산PF 취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2020년~2024년 귀속분)하면서 내규에 지급 대상, 절차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IB사업부 전문계약직과 합의한 부속합의서만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동 부속합의서상 부실 PF대출채권에 대한 손실예상액 산정 시 A본부가 손실예상액 산정 대상 여신을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A본부는 성과급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영업부서와 손실예상액 산정 대상 여신을 협의하고, 보수위원회에서 손실예상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보수위원회 규정'에 손실예상액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24년 귀속 성과급 지급분부터는 이미 매각이 완료되어 관련 손익이 확정된 'B사(회사의 계열사)에 매각된 손상채권' 관련 회수수익도 성과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업무실적 대비 과도한 성과보수가 지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PF대출 취급 관련 성과보수 산정 시 손실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성과급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내규에 마련하고, 이미 매각한 채권의 회수 실적은 성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성과보수 지급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연체율 관리 강화

회사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회사가 연체율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업권 평균보다 높고, PF대출, 가계대출, 기업대출 등 대출상품별 연체율도 모두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나는 등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대손상각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PF대출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신규 부실발생을 방지하는 등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PF대출 사후관리 관련 보고체계 정비

PF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부실채권 매각 또는 대손상각 등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회사는 사업 지체 및 연체 PF사업장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대응방안 보고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 등 PF대출 사후관리에 필요한 보고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PF대출 사후관리 관련 전자결재 등 보고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현황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내용에는 현황, 대응방안 및 경영진의 피드백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 보고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5) 내규 정비 강화

조직 개편 및 부서별·팀별 업무 변경 시 관련 내규를 지체 없이 개정하여 업무 중복 또는 공백을 방지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명확한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내규 개폐 등의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3.8.30.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수차례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도 직제규정 및 전결규정을 적시에 개정하지 않았으며, '부동산PF대출취급지침' 및 '부동산PF 수수료 운용지침'과 같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규의 관리부서를 영업지원팀으로 지정하고, 부동산PF 심사 및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2018 부동산PF 가이드라인' 및 '자산건전성분류 가이드라인' 등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였으며, '팩토링업무취급지침' 및 '어음할인취급지침' 등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사문화된 내규를 폐지하지 않고 직제규정상 부재한 팀을 관리부서로 지정하는 등 내규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내규의 최신성 및 관리부서의 적정성 등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운영하는 등 내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채권·채무 재조정 업무 불합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감소 등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PF대출 등 기업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조정기준을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이자 연체 중인 PF대출의 이자납입 주기를 이연하는 조건변경 계약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이를 채무조정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기업대출 채무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연체 해소를 위해 체결하는 대출 조건변경 계약은 채무조정으로 분류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열사간 채권매각 거래 시 절차 마련 및 적정성 검증 강화

채권 매각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내규로 마련하여 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PF채권 등 기업대출 매각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계열사인 B사에 PF채권을 일괄 매각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매각채권의 재매각 제한 조건 등이 포함되고 진성매매 여부에 대한 검토를 회계 전문가가 아닌 법무법인에게 의뢰하는 등 계열사간 채권거래 업무를 미흡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계열사간 채권 매매 시 채권 재매각 제한, 거래상대방 선정 등 세부 절차, 매매의 적정성 검토 절차, 매매 사후관리 절차 등 PF채권을 포함한 기업대출채권 매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한 내규 및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채권 매매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여신위원회 운영 미흡

내규 「여신심사규칙」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기업대출 취급 시에는 여신위원회에서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여신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심사안건, 찬반 여부, 심사의견, 심사결과 등을 기재한 “여신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여신위원회 의사록 및 여신위원 의견서상 심사의견이 공란이거나 찬반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여신위원회 운영이 미흡합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여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여신위원회 의사록에 심사의견 및 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여신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